

영등포구의회
제17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
홍보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3. 4. 29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92호로 2013년 4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인터넷매체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조례 제정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규정

나. 사업내용(안 제3조)

○ 인터넷매체를 통해 사업내용 규정

다. 구민참여 보장[안 제4조]

- 인터넷매체 홍보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
- 인터넷매체를 통해 제기된 구민의 궁금사항, 의견 등은
관련부서에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
- 인터넷매체를 통해 구정홍보에 참여한 자에게 일정범위
보상지원

라. SNS서포터즈 운영[안 제5조]

- SNS서포터즈의 위·해촉 및 역할

마. 사업지원[안 제6조]

-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UCC공모전 및 이벤트
실시 및 지원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의 구정
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,
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제출된
조례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제정의 목적, 용어 정의,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구정발전에 기여한 국민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새로운 홍보매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법체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국가정보화 기본법

제4조(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,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